

우리나라 會計監查基準에 대한 考察

蘇 眞 德

<目 次>	
I	序 言
II	監查基準의 形成
III	美國의 監查基準
IV	日本의 監查基準
V	우리나라의 監查基準
VI	結 言

I. 序 言

會計監查基準은 監查實務中에서 慣習으로서 發達된 것중에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歸納적으로 整理한 原則이라고 한다. 따라서 監查目的의 變遷과 監查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監查節次나 監查技術이 變化 發展되면, 監查實務도 變容될 것이고, 監查基準도 變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會計監查制度의 導入이 年淺하여 獨自의인 監查實務의 慣習이 形成되지 못한채 主로 美國과 日本의 會計監查制度를 導入하여 韓國의 風土에 適合한 것으로 造成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會計監查基準은 監查實務의 既成慣習中에서 바람직한 것을 추려서 監查의 指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反對로 指針을 規範적으로 設定하여, 監查實務를 妥當한 方向으로 誘導하는 先導的인 使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會計監查基準으로 하여금, 바라는 使命을 完遂케 하려면, 普遍妥當性을 지닌 監查基準의 性格을 明確히 하는 同時에 與件에 따라 段階적으로 誘導하는 데에 따른 改正을 通하여 完成하는 里程碑가 마련될 것이 必要할 것이다. 왜냐하면 先進國에서 보여준 試行錯誤의 不必要한 過程을 止揚하고, 實情에 맞도록 短時日에 바람직한 會計監查制度를 培養하려면, 明確한 目標設定과 그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方法의 合理化가 唯一無二한 解決策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우리 나라의 會計監查基準을 바르게 理解하고 整備하는 데에 基礎

著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Handwritten notes in the bottom left corner, including the number '55' and some illegible scribbles.

가 되는 監査基準의 本質, 監査基準의 構成 및 設定, 與件에 따른 整備方向을 檢討함으로써 그 進路를 發見하려고 한다.

II. 監査基準의 形成

現代的인 會計監査의 先導的인 役割을 하여온 美國에서도 監査基準이 形成되는 過程에서 여러 가지 動因과 曲折이 있었다.

監査를 하는 데에 어떠한 權威있는 基準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動因은 1938年 12月에 勃發한 맥케슨 로빈스會社(The Mckesson & Robbins Inc.)의 事件이었다고 한다. 이 事件이란 公表된 財務諸表에서 資產의 過大評價의 嫌疑가 있었고, 그것이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은 것이며, 同會社의 社長과 2名의 役員이 聯邦法違反者로서 告發된 데서 波紋을 던지게 된 것이다. 當時의 新聞이나 雜誌에 나타난 輿論은 會計實務를 擔當하는 職業人이나 會計士들에게 戰慄과 驚愕의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會計士들로 하여금 그들의 監査節次나 職業的水準에 대한 反省을 하게 하였고, 그 事件을 契機로 하여,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査基準(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라는 問題가 論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하여 監査基準의 形成에 대한 贊反의 兩論이 생기게 되었던바 그 兩論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基準形成에 대한 反對論

當時의 巨匠이었던 몬트고메리(R.H. Montgomery)教授는 50年의 偉大한 體驗을 土臺로 하여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이 批判하였다.

會計實務나 節次는 標準化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意見과 思慮에 대하여 固定的인 規則으로 代置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事實은 우리가 50年間に 體驗한 것이고, 萬一 언젠가 標準化되고 統一化되어 있었다면, 우리에게 委託된 個別的인 特殊事情下에서의 監査對象에 대한 信念을 表明하는 獨立性的 部分的인 喪失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職業은 결코 超人間的인 職業은 아니다. 우리들의 職業은 會計에 대한 眞實을 말하는 勇氣가 있음을 標榜하는 職業이다. 어떠한 職業도 靜止되지 않고, 前進이 아니면 後退가 있을 뿐이며, 公認會計士의 基本原則도 또한 이 鐵則에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들의 職業을 創設한 사람들에 의하여 設定된 理想과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鬪爭을 하지 않으면 發展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私의으로나 公的으로 規則이나 準則 또는 強制力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獨立性을 破壞할 것에 대하여는 反對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露骨的으로 反對를 한 것은, 이리노이州 公認會計士協會 理事長이 있던 Henry C. Hawes 가 1942年 5月에 同協會의 總會에서 發言한 反對演說이었다.

그에 따르면, 會計士들은 會計士라는 名稱을 하나의 職業, 특히 知的職業으로서 建設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萬一 監査를 一種의 節次나 規則으로 零落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監査를 하나의 常規的 事項으로 하려는 것이며, 그만큼 知的職業이라는 우리들의 目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의 業務를 하나의 經驗法則으로 歸納시키려는 것은, 設使 우리들이 그와 같이 努力하여도 그것은 實行不可能하다기 보다는 非實際的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事業의 去來나 形態는 매우 變化가 많고, 그 大部分은 個別的인 考慮와 取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缺陷없는 標準的인 統一監査 計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監査計劃이란 各個別的 具體的인 事情에 適合해야 되며 各個別의 事情에 대하여 우리들은 職業的 能力이 發揮되어야 하는 것이다. 醫學이나 法律學 및 神學의 경우에서처럼 職業人의 意見을 交換하는 會計 및 監査에 관한 學術的 團體가 있어야 마땅하고, 또 事實存在하고 있다. 萬一 監査基準이라는 것이 새로운 中間的인 監査節次書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不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들은 既性에 不幸하게도 財務諸表의 檢査와 監査節次의 擴張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왜 財務諸表의 監査 또는 檢査를 하기 위하여 認定된 어떠한 監査基準書나 監査節次書가 있어야 된다는 妥當한 理由를 發見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監査基準書나 監査節次書는 職業으로서의 會計士의 地位를 侵害하고, 不當한 攻撃에 대하여 不利한 地位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AIA 監査節次委員會는 우리들사이에 專門的인 意見을 交換하는 媒介機關으로서 貢獻하는 委員會이다.

오늘날 一般的으로 適用되기 위하여 同委員會가 새로운 監査節次書 또는 監査基準書를 展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見解에 대하여 懷疑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基準形成에 대한 贊成論

AIA의 見解에 따르면, 規則이나 基準이라는 用語가 魅力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複雜한 文明社會가 어느 程度의 規則이나 基準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行動의 基準은 모든 事業界 및 社會關係에 나타나고 있다. 行動의 基準이 道德律에 의하여 強要되거나 또는 世論이나 法律에 의하여 強制되기도 하며, 우리들의 自己規制나 法規에 의하지않는 道德律 및 世論의 效果如何에 依存되는 것이다. 우리는 自己調節 또는 自己規制가 無力하게 된 많은 實例를 想起할 수 있다. 例를 들면, 歷史上 自由라기 보다는 放縱이었던 時期에 로마 帝國이 沒落된 것을 回顧할 수 있다. 自治는 賢明한 文明人에 대한 가장 效果的인 支配形式이다. 이것은 職業에서도 다를 것이 없고, 會計의 職業도

例外는 될 수 없다. 萬一 自己規制라는 것이 우리들自身이나 大衆의 立場에서도 卓越한 形式이라면, 自己規制의 適用에 대한 適正한 領域을 決定하려는 데에도 인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業務上의 判斷의 重要性을 지나치게 強調하였기 때문에 多少間 命令的인 것이 있음을 看過하기 쉽다. 所要基準에 適合케 하기 위하여 監查節次를 考案하는데에 대한 判斷의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어야 할 것이지만, 基準의 存在는 그 自體가 하나의 嚴然한 事實인 것이다. 이 事實은 認識해야 하며, 決코 判斷의 問題는 아닌 것이다. 監查計劃의 樹立에는 客觀과 主觀의 兩者가 必要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客觀이란, 實務家의 判斷과는 따로 存在하는 基準에 의하여 判斷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主觀이란 節次가 基準에 適合한가의 問題로서 判斷의 執行에 의하여서만 解答될 수 있는 것이다. 監查와 會計上의 判斷이 重要함은 強調되어야 하지만, 監查에는 어느 程度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認識해야 하며, 이 範圍內에 自己規制의 領域이 있다고 할 것이다.

以上은 基準形成에 贊成한 AIA 監查節次委員會의 委員長이 1942年 5月 이리노이州 CPA 協會 總會에서 發言한 內容이다.

監查基準의 形成에 대한 贊反兩論의 根據가 어떠한 것이었던지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에서 監查基準이 形成되고 있다. 이것을 肯定的으로 解釋하여, 知的職業은 勿論이고 모든 人生生活에서 어느 程度의 彈力性있고 融通性있는 節制의 尺度는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嚴格하고 固定的方式을 適用하는 것은 避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監查基準이 먼저 形成된 것은 美國이고 그것을 攝取하여 日本이 監查基準을 整備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美國과 日本의 것들을 參考로 하여 우리들의 實情에 맞도록 監查基準을 마련하였으므로 兩國의 監查 基準形成過程을 살피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Ⅲ. 美國의 監查基準

1. 監查基準의 二大種別

AIA의 見解에 따르면, 監查基準은 性質上 첫째로 一般的으로 認定된 正規의 監查節次의 適用은 勿論이고, 適當히 訓練된 사람들에 의한 專門의 能力을 지니고 監查節次를 適用 (their application with professional competence by properly trained persons) 할것을 期待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證據의 性質과 範圍와를 支配하는 監查의 根本原則이라야 한다. (Auditing standards may be regarded as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auditing which control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evidence to be obtained by means of auditing procedures.)

이와 같이 二元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으므로 監査基準은 다음과 같이 二大分類를 하였다.

第1의 分類는 人的 또는 一般基準이고, 이것은 現場事務와 그 報告의 兩者를 支配하는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正規의 監査節次」가 「適當히 訓練된 사람들에 의한 專門的 能力」을 發揮하여 適用될 것을 要請하는 基準을 뜻한다.

第 2의 分類는 現場事務의 行爲(conduct of the field work)와 그 報告에 관한 基準이다. 이것을 監査節次라는 手段에 의하여 얻어질 證據의 性質과 範圍와를 支配하는 監査의 根本原則이라고 보는 것이다.

第 1分類의 基準은 그 性質上, 사람에 관한 것(personal in their nature), 즉 個別的인 監査人의 事務遂行能力의 尺度(measure)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第 2'分類의 것은 節次的的(procedural)인 것이며, 監査節次的의 適用時에 達成될 廣汎한 目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第1의 基準은 監査人의 職業的 資格에 關係되고, 第2의 基準은 監査를 實施하고 그 報告를 할 경우의 判斷(judgment)에 關係되는 것이다.

以上은 AIA의 監査基準에 관한 見解이다. 이러한 見解는 매우 明瞭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簡單한 것은 아니다.

2. AIA 監査基準에 대한 批判

AIA 監査基準은 SEC(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要請을 받아 드려서 2種으로 區分하여 成文化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集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第 1分類의 人的 또는 一般基準

- ① 一般的으로 認定된 正規監査節次가 適當히 訓練된 사람들에 의하여, 職業的 能力으로써 適用될 것을 要求하는 基準
- ② 現場事務와 그 報告의 兩者를 支配하는 基準
- ③ 그 性質에 있어서 사람에 관한 基準
- ④ 個別的인 監査人의 事務遂行能力의 尺度에 관한 基準
- ⑤ 監査人의 職業的인 資格에 관한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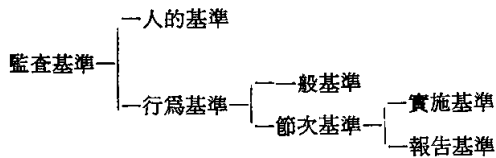
第 2'分類의 現場事務와 그 報告에 관한 基準

- ① 監査節次라는 手段에 의하여 얻어질 證據의 性質과 範圍와를 支配하는 監査의 根本原則이 되는 基準
- ② 節次的인 基準
- ③ 監査節次的의 適用時에 達成될 廣汎한 目的에 관한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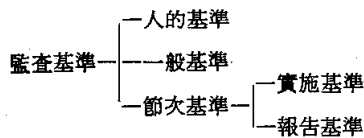
④ 監査人의 監査를 實施하고 그 報告를 할 경우의 判斷에 관한 基準

以上에서 問題가 되는 첫째의 것은, 第1分類의 人的基準 또는 一般基準이다. 즉 監査人의 人的特性이나 職業的 資格을 規制하는 人的基準을 뜻하는가, 節次基準과는 다른 監査事務全般에 관한 一般基準인가, 또는 兩者를 包含한 것인가이다. 또 人的基準과 一般基準은 明確히 區分하기 어렵다면 그 主從關係는 어떻게 볼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그리고 第2 分類의 節次基準과 對應하는 것이 人的基準이나 또는 一般基準이냐의 疑問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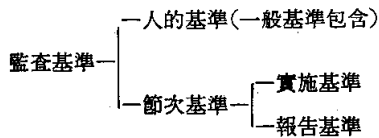
AIA 監査基準에 있어서는 이것을 「人的基準 또는 一般基準」이라고 하였고, 表現上에서 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的基準과 一般基準을 같은 것으로 하여 成文化하고 있다. 이 것은 여러 가지 事情에 의하여 具體化되겠지만, 理論的으로는 監査人 自體에 관한 規制와 監査人을 包含한 監査行爲全般에 대한 基準과는 區別되어야 하고, 前者를 人的基準, 後者를 一般基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監査基準의 體系는 다음과 같은 類型의 것을 構想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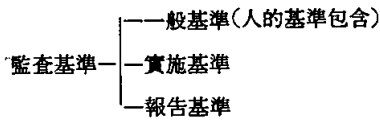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생각하면, 具體的인 規制化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方式을 採擇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AIA 公認會計士監査」에서 처럼 表現한 다음 樣式은 妥當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現在의 AIA 監査基準, 日本의 監査基準 및 韓國의 監査基準이 採擇하고 있는 表現樣式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表現樣式은 理論的으로 完全한 것은 아니며, 더우기 具體的으로 規制事項을 成文化하여 配列하는 경우에 混亂을 招來하는 根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具體的인 規制事項이 많을 수록 助長되는 것이다.

3. 美國監査基準의 十大規制

1948年 9월에 開催된 AIA年次總會에서 承認 採用된 監査基準은 一般基準 3 個項, 實施基準 3 個項, 報告基準 3 個項의 都合 9 個項이고, 1949年 11月의 年次總會에서 報告基準의 第 4 項이 追加承認되어 十大規制가 되었다.

그 十大規制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一般基準의 規制內容

- 가. 監査人の 訓練과 熟練
- 나. 監査人の 精神의 態度에 있어서의 獨立性
- 다. 監査人の 事務遂行上에 있어서의 正當한 注意

(2) 實施基準의 規制內容

- 가. 充分한 現場事務의 準備計劃
- 나. 監査人이 그것에 信賴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被監査會社의 現行 內部統制의 適當한 判定
- 다. 證據物件의 有効性

(3) 報告基準의 規制內容

- 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準據
- 나. 會計原則의 適用에 있어서 繼續性의 遵守
- 다. 財務諸表 및 監査報告書에 있어서 有効適切한 明示
- 라. 會計士報告書에 있어서 基準에의 論及(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or applicable in the circumstances)

以上の 美國監査基準은 長久한 實務經驗과 會計學의 發達된 成果를 土臺로 하여 形成된 것이다. 이것이 以後에는 部分的인 改正도 없이 遵守되어 오고 있다.

이것을 日本이나 韓國에서는 어떻게 導入하여 消化시키고 있는가를 檢討하여 보면 앞으로의 改正方向을 摸索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日本의 監査基準

日本은 終戰後, 經濟의 安定再建과 經濟民主化를 目的으로 하는 具體的 諸方策의 一環으로서, 企業會計制度의 改善統一과 會計教育의 普及發達을 期하기 위하여 閣議決定에 따라 1947年 6月에 經濟安定本部內에다 設置한 企業會計對策調查會가 衆知를 모아 深思熟考한 끝에 1950年 9月에 監査基準 및 監査實施準則을 公表하였다.

한편 1951年 7月부터는 一定한 條件을 갖춘 上場會社에 대하여 極히 制限된 變態的인 方式으로 實施한 法定監査는 1955年 1月以後에 正規監査로 할 것을 目標로 하는 漸進主義에 立脚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緻密한 計劃下에 官民協力으로 마련된 日本의 監査基準은, 近代監査의 經驗이 없고 公認會計士監査의 慣行이 形成되지 못한 基盤에 선 것이므로 相當히 陳腐한 것임을 免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1954年 12月 25日에 第1次의 改正을 하게 되었다.

첫째는 啓蒙的인 前文을 削除하였다.

둘째는 監査一般基準을 純化하였다. 즉 舊基準에는 監査一般基準으로서 다음의 8個項目을 設定하였었다,

- ① 適格性의 條件에 관한 條項
- ② 公正不備의 態度에 관한 條項
- ③ 正當한 職業的 注意에 관한 條項
- ④ 秘密保持에 관한 條項
- ⑤ 監査證明의 意義에 관한 條項
- ⑥ 監査人의 責任限界에 관한 條項
- ⑦ 監査證明의 限界에 관한 條項
- ⑧ 監査人의 任務限界에 관한 條項

위의 8個條項中 ⑤에서 ⑧까지의 不必要한 常識的인 것을 削除하고 보니 AIA 監査基準과 거의 같고 ④項만 덩으로 남게 되었다, 美國에서는 이것은 精神的 態度의 獨立性中에 當然히 包攝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셋째로 舊監査基準에서 監査實施基準은 다음의 7個條項으로 된 것이 改正되었다.

- ① 監査事務의 計劃性과 監督性에 관한 條項
- ② 合理的인 證據에 관한 條項
- ③ 重要性和 相對的 危險性에 관한 條項
- ④ 內部統制의 信賴性에 관한 條項

- ⑤ 監査事務의 經濟性에 관한 條項
- ⑥ 企業會計原則의 遵守와 繼續性에 관한 條項
- ⑦ 財務諸表規則의 準據性에 관한 條項

改正은 ②와 ③을 合成하여 ②로 하고, ④와 ⑤를 合成하여 ③으로 하는 同時에 表現形式을 簡潔하게 하였을 뿐이고 實質的인 內容은 거의 그대로 하였다.

넷째로, 舊報告基準은 다음의 5個條項으로 된 것을 3個條項으로 改定하였다,

- ① 報告書의 記載內容에 관한 條項
- ② 報告書의 範圍區分에 관한 條項
- ③ 報告書의 意見區分에 관한 條項
- ④ 補足的 說明事項에 관한 條項
- ⑤ 限定 및 除外事項에 관한 條項

監査報告에 관한 具體的인 要件을 따로 監査報告準則으로 制定하였기 때문에 改正에 즈음하여 ① 記載內容, ② 意見表明, ③ 補足的 說明事項에 관한 3個條項으로 集約表示하였다.

以上과 같이 改正한 結果, AIA의 監査基準과 比較하여 보면, 一般基準이 1個條項, 實施基準이 2個條項이 많은 反面에 도리어 報告基準은 1個條項이 적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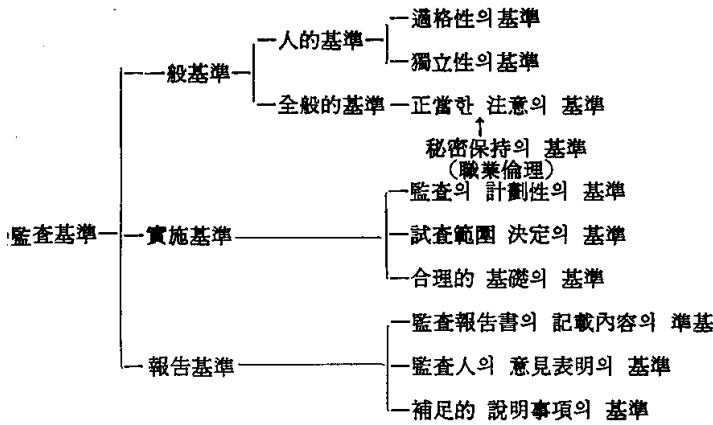
1957년에 正規監査가 시작되고, 證券去來法監査는 日本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順調로이 發展되었다. 그러나 1964년부터 1965년까지의 不況期에 被監査會社中 倒産會社가 續出하게 되었다. 이들중에는 長期的으로 大規模의 粉飾決算을 하여왔고 公認會計士도 그것을 看過하여 虛偽의 監査報告書를 提出한 事例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公認會計士監査制度는 社會의 峻嚴한 批判을 받게 되었으며, 監査制度의 強化가 要望되기에 이르렀다. 1965年 3月부터 監査體制의 充實強化를 위한 方策의 하나로서 監査基準 및 準則의 改正에 着手하였다,

그 改正作業의 順序로서 監査基準의 審議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當時의 情勢로서 審議期間에 餘裕가 없으므로 監査節次의 強化에 重點을 두고, 먼저 監査實施準則의 改正作業부터 着手하여 1965年 9월에 그것을 完了하고, 1966年 4월에 監査基準과 監査報告準則의 改正을 完了하였다. 이것이 現行의 監査基準 및 準則이다.

第2次 改正의 內容은, 一般基準 第4條項의 監査調書의 規制를 實施準則에로 보내고, 實施基準의 第4條項과 第5條項을 完全히 削除하는 同時에 若干의 字句修正을 하였다.

이와 같이 第2次의 改正에 의하여 整備된 日本의 監査基準의 體系를 一覽表로 하여 보

면 다음과 같이 된다,



V. 우리나라의 監査基準

1960年 8月에 韓國公認會計士會는 會計監査基準起草委員會로 하여금 會計監査基準을 制定케하여 1961年 4月 1日 公表하였다.

一般基準으로서는 ① 監査人 適格性的 基準, ② 公正不偏의 態度基準, ③ 正當注意의 基準, ④ 秘密嚴守基準, ⑤ 責任限界基準의 5個條項이 있다.

實施基準으로서는, ① 監査計劃性的 基準, ② 監査經濟性的 基準, ③ 合理的 證據基準, ④ 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遵守基準, ⑤ 財務諸表準則準據基準의 5個條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報告基準으로서는 ① 監査報告書 明瞭性基準, ② 財務諸表에 관한 意見表明基準, ③ 繼續性適用基準, ④ 補充的 說明要件基準, ⑤ 免責條件基準의 5個條項으로 되어 있다.

1. 監査의 一般基準

美國의 監査基準에서 一般基準은, 人的 또는 一般基準(personal or general standards)이고 주로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監査人の 人的資格에 관한 基準인 동시에 監査人の 事務遂行全般에 관한 基準이다. 이것을 ① 適格性的 基準, ② 精神的 獨立性的 基準 ③ 正當한 注意基準으로 要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美國의 것을 基本으로 하면서 韓國的인 實情을 勘案하여 5個條項으로 하였다. 그것들 中에는 AICPA가 啓蒙的으로 解說한 것들을 成文化하여 附加시킨 것이 있다. 그러므로 第1次 改正前의 日本의 一般基準이 8個條項으로 된 것에 比하면 進一步한

것이지만, 陳腐한 것이 되고 있다. 第2次 改正後의 日本의 一般基準은 第4條項을 除外하던 美國의 것과 같다. 이 경우에 第4條項인 秘密嚴守基準도 不必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秘密保全의 義務는 監查人의 職業倫理의 問題이고, 正當한 注意의 一面이기도 하다. 監查實施中の 모든 事項은 監查調書에 記入되어 있으며, 監查行爲의 妥當性을 立證하는데 重要한 證據物件으로서 相當期間 安全하게 保管하고 있어야 되는바 이것은 또한 會社의 秘密事項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會社의 諒解없이 그 內容을 他人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監查人으로서 當然히 遵守해야 할 注意義務를 啓蒙的으로 規定한데 不過하며 반드시 必要한 것은 아니다. 第5條項의 責任限界에 관한 것도 常職的인 것으로 보면 一般基準에서는 ① 適格性的 基準, ② 精神的 獨立性的 基準, ③ 正當한 注意基準이 根幹이 될 것이다.

2. 監查의 實施基準

우리 나라의 監查實施基準은 美國의 現場事務의 基準(standards of field work)에 該當한 것이다. 美國의 것에는 ① 充分한 現場事務의 準備計劃의 樹立, ② 監查人의 信賴性的 程度를 알기 위하여 被監查會社의 內部統制의 判定, ③ 有效한 證據物件의 入手에 관한 3個條項의 基準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美國의 것을 攝取하면서 AICPA의 啓蒙的 說明事項中 適時性, 秩序性, 相對的 危險性, 經濟性 등의 事項까지도 成文化하였다. 그리고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에 既定事實로 되어 있는 것들과 調整을 하여 5個項으로 하였다.

實施基準은 監查節次의 選擇適用을 規制하는 原則이다. 이러한 것의 必要性을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監查를 實施하는 경우에 選擇適用되는 監查節次는 企業의 事情에 따라 다르며,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 없고, 監查人의 判斷에 따를 餘地가 많다. 그러나 監查의 能力과 經驗은 監查人에 따라 差異가 있으므로 모든 것을 監查人에게 放任하는 것은 社會的으로 信賴를 받을 수 있는 處事라고 보기 어렵다. 또 監查의 實施에 관한 公正妥當한 任務限界를 明確히 하지 않으면 부질없이 監查人의 責任만 무겁게 된다. 그러므로 監查에 대한 信賴性을 높이는 동시에 任務의 限界를 定하기 위하여 監查人의 判斷을 規制하는 最小限의 基準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實施基準의 內容을 整理하여 보면, 規制內容을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즉, ① 監查의 計劃性基準, ② 試查範圍의 決定基準, ③ 合理的 基礎의 基準(必要充分한 證據)로 要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例를 들면, 必要하고 充分한 證據의 質을 決定

하러던 重要性(materiality)의 原則・相對的 危險性(relative risk)의 原則・經濟性的 原則 등에 따라야 되고, 量的 決定은 試查範圍의 決定基準에 따라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枝葉的인 것까지 明文化하여 基準으로서 羅列하는 것은 體裁上으로나 條項間的 均衡上으로나 陳腐한 表現樣式이라고 할 것이다.

3. 監査의 報告基準

監査報告書는 監査人이 監査事務를 完了하는 最終의 段階이고, 監査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依頼人이 監査의 內容을 알 수 있는 唯一한 書類이고, 한편 監査人의 知識・經驗・技能 등이 判明되어 有能하고 無能한 것이 判明되는 資料이기도 하다, 그리고 株主나 그 밖의 利害關係者에게는 重大한 影響을 주는 監査의 意見表明인 것이다. 그러므로 一定한 基準에 따라 그 內容을 簡潔明瞭하게 記載하여 報告하는 동시에 責任의 範圍를 明確히 記載하여 意見を 表明하는 것은 利害關係人뿐만 아니라 監査人自身的 權益을 옹호하는 데도 重要하다.

우리 나라의 報告基準은 美國의 「standards of reporting」에 基礎를 두면서 그것에 대한 說明事項까지도 明文化하여 5個條項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의 세 가지 基準으로 要約될 수 있다.

① 監査報告書의 記載內容基準

監査報告書의 內容은 監査의 概要와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으로 되어야 한다. 前者를 範圍區分(scope section)이라 하고, 監査對象이 된 財務諸表의 範圍, 監査基準에 準據하여 監査하였는가의 與否, 一般的인 監査節次 및 그 때의 事情에 따라 必要한 다른 節次가 實施되었는가의 與否의 세 가지 事項을 簡潔하게 記載하고, 專門家로서의 意見を 形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程度의 監査를 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後者는 意見區分(opinion section)이라고 하며, 監査人의 結論으로서 財務諸表의 適否에 관한 意見を 明瞭하게 記載하는 것이다.

② 監査人의 意見表明基準

監査人은 公正妥當한 會計原則 및 關係法令에 따라 入手한 證據를 評價하여 監査의 結果를 判斷하고, 監査報告書의 意見區分에다 財務諸表에 대한 自己의 意見を 記載한다. 監査意見은 보통 4個部分으로 되고, (가) 公正妥當한 會計原則의 遵守에 관한 意見, (나) 會計原則適用上의 繼續性에 관한 意見, (다) 財務諸表 表示의 合法性에 관한 意見, (라) 財務諸表 全體의 適否에 관한 意見으로 區分된다. 여기에서 (라)가 監査人의 最終的인 結論이고, (가)에서 (다)까지는 그 前提가 되는 部分的인 意見인 것이다.

財務諸表의 重要項目에 대한 處理가 會計原則에 準據하지 않고, 또 會計處理의 原則 및 節次에 重要한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그 趣旨와 理由를 「除外事項」(exception) 또는 「限定事項」(qualification)으로서 記載해야 하며, 萬一 除外事項이 너무나도 重大하여 財務諸表가 全體的으로 適正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否定的인 意見이 될 것이다.

③ 補充의 說明事項의 基準

企業에 따라서는 監査年度 經過後 監査終了日까지의 사이에 會社의 合併・買收・營業讓渡・増減資・火災 등과 같은 災害도 있어서 次期以後의 財政狀態나 經營成績에 중대한 영향을 줄 事件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事件은 아무리 重要한 것이라도 期間後에 發生한 것이므로 監査年度의 財務諸表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利害關係者의 企業에 대한 判斷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監査報告書作成時까지 나타난 事項은 補足的으로 報告書에 記載할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이것은 監査人의 意見表明은 아니고 事實의 表示이므로 除外事項과는 區分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觀察하면, 美國이나 우리 나라의 報告基準보다도 日本의 3 個條項表現의 것이 가장 簡潔하다고 할 것이다.

Ⅵ. 結 言

앞에서 迂餘曲節은 있어도 美國에서 經濟社會의 要請과 豐富한 會計實務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監査基準이 形成되기에 이르렀고, 學界와 實務者들을 包含한 官民協助에 의하여 여러 차례의 討議를 거듭하여 1948年 4월에 9個條項으로 된 監査基準이 作成 公表되었다. 그리고 1949年 11월에 報告基準의 1 個條項 追加改正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1950年 9월에 最初로 監査基準이 制定 公表되었고, 이것이 지나치게 拙速作業인데다 啓蒙的인 句節이 너무 많아서 體制上으로도 또는 各條項間의 均衡 혹은 比重이 고르지 못하였다. 1954年 12월에 第1次改正을 통하여 一般基準의 第4條項(職業倫理에 관한 秘密保持基準)을 除外하면, 美國의 것보다 더 整然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1966年 4월에 第2次改正을 통하여 監査準則을 補充함으로써 監査制度를 整備強化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年 4월에 監査基準을 制定 公表하였다. 그러므로 美國의 監査基準(1949年)과 體制整理가 끝난 日本의 監査基準(1954年)을 參酌하였다고 보아야 된다. 한편 監査理論의 發達에 따라 監査基準의 規制內容도 闡明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體制가 整備되지 못하며, 各條項間의 關係도 不均衡의 것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社會實情이나 貧

弱한 會計慣習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지나치게 指導的 啓蒙的인 것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基準은 어디까지나 基準으로서 最低限의 基本的인 것으로 要約되어야 監査의 指針으로서 彈力性和 融通性이 確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改正方向은 美國이나 日本의 것보다는 整備된 것으로서 簡潔하게 해야 할 것이며, 더우기 日本의 監査準則 보다도 詳細한 韓國의 監査準則이 1972年 10월에 制定 公表되고 있으므로 早速한 時日內에 監査基準의 改正은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S.E.C., *Accounting Series Releases*, No. 19, Dec. 5, 1940.
- J.T. Anyon, *Recollections of the Early Days of American Accountancy 1883-1893*, N.Y., 1925.
- Arthur Anderson & Co., *Accounting and Reporting Problems of the Accounting Profession*, Chicago, 1960.
- A.W. Holmes, *Auditing; Principles and Procedures*, 4th ed., Homewood, 1956.
- R.L. Kane ed., *CPA Handbook*, N.Y., 1952.
- A.C. Littleton, *Essays on Accountancy*, Urbana, Illinois Univ. Press, 1961.
- R.K. Mautz & H.A. Sharaf, *The Philosophy of Auditing*, AAA, 1961.
- G.O. May, *Financial Accounting*, N.Y., 1961.
- R.H. Montgomery, *Auditing Theory and Practice*, 4th ed., N.Y., 1927.
- W.A. Paton ed., *Accountants' Handbook*, N.Y., 1933.
- W.A. Staub, *Auditing Developments During the Present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42.
- AIA,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N.Y., AIA, 1934.
- AICPA,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No. 33, N.Y., 1963.
- AICPA,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No. 41, N.Y., 1969.
- J.A. Cashin ed., *Handbook for Auditors*, N.Y., 1971.
- 片野一郎譯, *リトルトン會計發達史*, 同文館, 1960.
- 岩田巖, *會計士監査*, 森山書店, 1954.
- 岩田巖, *會計原則と監査基準*, 中央經濟社, 1955.
- 河合秀敏, *監査理論の基礎*, 同文館, 1967.
- 喜田義雄, *アメリカ監査論*, 森山書店, 1968.
- 久保田音二郎, *財務諸表監査*, 中央經濟社, 1959.
- 森 實, *近代監査の理論と制度*, 中央經濟社, 1967.
- 櫻井弘藏, *會計監査論*, 中央經濟社, 1968.
- 山辨忠恕, *監査制度の展開*, 有斐閣, 1961.
- 大矢知浩司, *會計監査アメリカにおける 生成と 發展*, 中央經濟社, 1971.
- 日下部與市, *新會計監査詳説*, 中央經濟社, 1971.
- 日下部與市, *監査基準逐條詳解*, 中央經濟社, 1972.